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0 발의연월일: 2024. 7. 11.

발 의 자:이훈기·김태선·김 현

황정아 • 민병덕 • 서영교

김정호 · 김영배 · 박민규

한준호 • 문금주 • 위성곤

김용만 • 정동영 • 최민희

의원(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운영과 직무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 되는 동시에,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공정하고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견제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 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해촉요구 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심의위원에 대한 해촉요구 등) ① 국회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받은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u>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촉
	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20조의2(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요구 등) ① 국회는 심의위원
	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받은 대통령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지
	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
	<u>다.</u>
	③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

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